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(요지)

- ★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하는 등 「거리두기 2단계」로 완화하되,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의 방역 강화 등 정밀한 방역관리 강화
- □ (방역 조치 조정) 서민층 생업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조정 및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(~9.27.)
 - O 음식점·카페 운영 제한 및 학원·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등은 완화하되,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 강화
 - ※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 - ① (카페)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, 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·빙수점에 대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을 통해 밀집도 최소화
 - ※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어 앉기 실시
 - ② (음식점) 일정 규모(예: 150㎡) 이상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에 대해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의무화
 - ※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, 덜어먹기 등 수칙 권고 및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
 - ③ (학원·체육시설 등) 교습소, 학원(독서실 포함)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 기관,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의무화
- <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> : [붙임 1] 정부지침-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참고

시 설	기존 방역 조치	조정방안(안)
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	▶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작성, 거 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	►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작성, 거리두 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* 포장·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
프랜차이즈형 커피 · 음료, 제과제빵, 아이스크림/빙수점	▶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 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작성, 거 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	 ▶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★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작성,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★ 포장·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
학원(300인 미만) · 스터디카페 · 직업훈련기관 · 실내체육시설	▶ 집합금지 (학원·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)	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작성, 거리두 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
교습소	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작성, 거 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	▶ 좌동

④ (PC방) <u>미성년자 출입금지, 좌석 띄워 앉기, 음식 섭취 금지</u> 등 의무화(~ 9. 27.)하며 고위험시설(집합금지)에서 해제 (전국 조치)

□ (병원 요양시설 등 방역 강화)

- O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, 요양병원 · 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
- O 병원 입원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(전국, 2단계 한시), 수도권 요양병원·시설에 대한 점검 및 표본 진단검사 실시, 면회 금지 유지 등 방역관리 철저
 - ※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(pooling) 실시 검토
- □ (이 외 2단계 방역조치 유지) 고위험시설, 교회 등에 대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. 27.(일)까지 지속 적용
 - 실내 50인·실외 100인 이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
 - 클럽·유흥주점·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※ 방문판매업의 소모임. 투자설명회 등 집중 점검 및 구상권 청구 등 대응 강화
 - O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고 모임·식사 금지
 - O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및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

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현황(요약)

□ 적용기간 : 2020. 9. 14.(월) 0시 ~ 9. 27.(일) 24시

구	분	조 치 사 항	2단계 조정결과
집합· 모임· 행사		○ 실내 50인,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.공적 집합·모임·행사: [금지] ※ 인원 기준: 원칙적으로 집합·모임·행사의 총 규모를 가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사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·접촉이 불기한 경우 분합된 공간(예: 교실) 내 안원을 가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, 다만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최 철저 준수 <실내 50인 이상 /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> - (행사)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정회 학술대회 가념식 수관회 집회 페스타본 축제 대규모 관사트, 싸인회 강연 등 - (사적모임) 결혼식,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최갑연, 장례식, 동호회, 돌잔치, 워크샵, 계모임 등 - (각종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(한 교실 내 50인 이내 인 경우 하용)	[중수본] - 당초 (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) - 연장 (9. 7. 0시 ~ 9. 20. 24시) - <mark>조정</mark>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공공행사		 ○ 전부처, 지자체, 관련 산하·공공기관 등에서 주 관하는 행사 : [연기 · 취소] ※ 불가피 시, 실내 50인 미만, 실외 100인 미만으로 방역수최 준수 	[중수본] - 당초 (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) - 연장 (9. 7. 0시 ~ 9. 20. 24시) - 조정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<u>스포</u> 행		○ [무관중 경기 전환]	[중수본] - 당초(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) - 연장 (9. 7. 0시 ~ 9. 20. 24시) - <mark>조정</mark>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다중 공공		○ 정부, 지자체, 교육청 및 소속·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中 <u>실내 국공립시설</u> : [운영 중단]	[중수본] - 당초(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) - 연장 (9. 7. 0시 ~ 9. 20. 24시) - 조정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		○ (실내) 시립공공체육시설 : [운영 중단]	[증수본] - 당초 (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) - 연장 (9. 7. 0시 ~ 9. 20. 24시) - <mark>조정</mark>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	공공	○ (실외) 시립공공체육시설 : [운영 중단	[인천시] - 당초 (9. 1. ~ 9. 6) - 연장 (9. 7. 0시 ~ 9. 13. 24시) - <mark>조정</mark>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		○ 인천대공원, 월미공원의 야영장, 매점 등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: [전면 폐쇄] ※ 산책로 등 실외공간은 개방 ※ 공원구역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: 계도(20.10.12), 시행(20.10.13. / 과태료 10만원 이하)	[인천시] - 당초 (8. 24. ~ 별도 해제 시) - <mark>조정</mark>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		○ 인천 해수욕장 : [폐장]※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물품대여 종료※ 해양수산부 해양례저관광과-460(2020.8.18.)호	[해양수산부 지침] - <u>유지</u> (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)

	 고위험시설 11종*: [운영 중단] * (11종) 클럽・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 공연장, 실내집단운동/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 ※ 당초 유통물류센터는 운영중단에서 제외(중수본) ※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: 12종 → 11종 	[중수본] - 당초 (8. 19. 0시 ~ 별도 하제 시) 12종 ※ PC방, 결혼식장의 뷔페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(8. 19. 18시 ~) - 연장 (9. 7. 0시 ~ 9. 20. 24시) 12종 - 조정 (9. 14. 0시 ~ 9. 27. 24시) 11종
	 ○ 다중이용시설 10중* :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 [집합제한] * (10종) 오락실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실내결혼식장, 공연장, 영화관, 목욕탕.사우나, 멀티방.DVD방, 장례식장, PC방(9.14. 0시부터 추가) * (PC방) 고위협시설 해제, 미성년자 출입금지, 좌석 한 칸 띄어앉기,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	[중수본] - 당소 (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) - 연장 (9. 7. 0시 ~ 9. 20. 24시) - 조정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	○ 일정규모(예: 150m) 이상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괴점 :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 [집합제한] ※ 포장.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,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	[중수본] - 당초 (8. 30. 0시 ~ 9. 6. 24시) - 연장 (9. 7. 0시 ~ 9. 13. 24시) - 조정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민간	○ 프랜차이즈형 커피 · 음료전문점 · 제과제빵점 · 아이스크림/빙수 전문점 :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 [집합제한] ※ 포장배당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,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※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	[중수본] - 당초 (8. 30. 0시 ~ 9. 6. 24시) - 연장 (9. 7. 0시 ~ 9. 13. 24시) - <mark>조정</mark>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	○ 교습소 · 학원(독서실 포함) · 스터디카페 · 직업 훈련기관, 실내체육시설 :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 [집합제한]	[중수본] - 당초 (8. 31. 0시 ~ 9. 6. 24시) - 연장 (9. 7. 0시 ~ 9. 13. 24시) - <mark>조정</mark>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	○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: [전면 운영 중단 권고]	[인천시] - 당초 (8. 23. 0시 ~ 별도 해제 시) - 연장 (8. 23. 0시 ~ 9. 13. 24시) - 조정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	○ 병원(신규).요양시설(내용 추가) 등 방역 강화 ※ 치명률이 높은 고위협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, 요양 병원·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 ※ 병원 입원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(전국, 2단계 한시), 수도권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점검 및 표본 진단검사 실시, 면회 금지 유지 등 방역관리 철저 *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(pooling) 실시 검토	[중수본] - 당초 (8. 30. 0시 ~ 9. 6. 24시) - 연장 (9. 7. 0시 ~ 9. 27. 24시) - 조정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	 수도권 요양병원, 요양시설 면회 금지,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휴원 권고 	

		○ 방문판매업 소모임 : [점검 · 관리 강화] ※ 방문판매업의 소모임, 투자설명회 등 집중 점검 및 구상권 청구 등 대응 강화	[중수본] - 당초 (8. 30. 0시 ~ 9. 6. 24시) - 연장 (9. 7. 0시 ~ 9. 20. 24시) - <mark>조정</mark>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		○ 교회 -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,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,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(집합제한 조치)	[중수본 : 교회] - 당초 (8. 19. ~ 별도 해제 시) - <mark>조정</mark>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		○ 타종교시설 -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미사.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과 행사, 단체식사 등을 금지 등 11개 항목 준수 필수	[인천시 : 타종교] - 당초 (8. 30. ~ 별도 해제 시) - <mark>조정</mark> (9. 14. 0시 ~ <u>별도 해제 시</u>)
		○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: [휴관 · 휴원 권고] ※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	[중수본] - 당초 (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) - 연장 (9. 7. 0시 ~ 9. 20. 24시) - 조정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학.	교	○ 교육부 계획에 의거, 추진	- 교육부, 보건복지부 협의사항
기관. 기업	공공	○ 市 및 군.구, 공사.공단 직원 ※ 유연재태근무 등 현원 1/3 의무 시행	[인천시] - 당초 (8. 20. ~ 별도 해제 시) - 연장 (8. 24. ~ 별도 해제 시) - 조정 (9. 14. 0시 ~ 별도 해제 시)
	민간	○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	[중수본] - 당초 (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) - 연장 (9. 7. 0시 ~ 9. 20. 24시) - 조정 (9. 14. 0시 ~ 9. 27. 24시)
우리 市 행정조치		○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 <u>의 마스크 착용</u> 의무화 - (착용기간) 2020, 8, 20, 15:00 ~ 별도 해체 시 - (착용장소) 실내*, 실외**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※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* 실내: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** 실외: 집회,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- (계도기간) 2020, 10, 12, / (시행) 2020, 10, 13, (과태료 10만원 이하) ※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및 FAQ 전파(2020, 9, 2,)	
		○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- (당 초) 2020. 8. 24. 0시 ~ 9. 6. 24시 - (연 장) 2020. 9. 7. 0시 ~ 9. 20. 24시 - (명령대상)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자 - (별 금) 벌금 300만원 이하 ※ 금지되는 집회는 '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	
		○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- (작용기간) 2020. 8. 26. 0시 ~ 별도 해제 시 - (계도기간) 2020. 10. 11. / (시행) 2020. 10. 12. - (과 대 료) 운송사업자(300만원 이하) / 이용자(10만원 이하)	
		○ 인천광역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 조치 [편의점 집합제한 조치 해제 9. 14. 0시] - (당 초) 2020. 9. 3. 0시 ~ 9. 6. 24시 - (연 장) 2020. 9. 7. 0시 ~ 9. 13. 24시 - (별 금) 발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※ 다만, 휴게음식점 150㎡ 이상의 편의점은 9. 14(월) 0시 ~ 9. 27.(일) 24시까지 정부지침 상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임에 유의	

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현황(세부현황)

※ 조정 및 변경사항은 적색 표시

I. 조정 개요

1 집합·모임·행사

- 1-1.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· 공적 집합·모임·행사: [금지]
 - ▶ (당초) 2020. 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
 - ▶ (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20. 24시
 - ▶ (조정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
 - ※ <u>이때 집합·모임·행사란</u>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

< 실내 50인 이상 /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>

- ▲ (행 사) 전시회, 박람회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싸인회, 강연 등
- ▲ (사적 모임) 결혼식,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회갑연, 장례식, 동호회, 돌자치, 워크샵, 계모임 등
- ▲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(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)

〈 인원 기준 〉

- ▲ 원칙적으로 집합·모임·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,
- ▲ <u>공간이 분할되어 있고, 공간 간 이동·접촉이 불가한 경우</u>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음
- ※ 다만,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

〈사례〉

- ▲ 학교 건물에서 채용시험을 치르는 경우, 서로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 간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교실별 응시인원이 50인 이내면 허용
- ▲전체 참석자가 80명인 회의의 경우, <u>20명씩 나누어</u> 서로 다른 회의실을 사용하고 영상 회의로 연결하는 경우 허용

< 예외>

- ▲정부·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, 긴급성 등*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혐의 하에 예외 허용,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- *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

2 공공행사

2-1. (정부, 지자체, 관련 산하· 공공기관 등 주관 행사): [연기·취소]

- ▶ (당초) 2020. 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
- ▶ (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20. 24시
- ▶ (조정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

※ 불가피 개최 시, 실내 50인 미만, **실외 100인 미만**으로 방역수칙 준수 ※ 모든 회식 금지, 점심식사 시, 구내식당 및 도시락 이용 통해 이동 최소화

3 스포츠 행사

3-1. 프로 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: [<u>무관중 경기</u>]

- ▶ (당초) 2020. 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
- ▶ (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20. 24시
- ▶ (조정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 ※ 야구, 축구, 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**무관중** 진행

4 (공공) 다중이용시설

4-1. (실내) 국공립시설 : [운영 중단]

- ▶ (당초) 2020. 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
- ▶ (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20. 24시
- ▶ (조정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
 - ※ 정부.지자체.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(공공기관 포함)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

4-2. (실내) 시립공공체육시설: [운영 중단]

- ▶ (당초) 2020. 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
- ▶ (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20. 24시
- ▶ (<u>조정</u>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

4-3. (실외) 시립공공체육시설: [운영 중단]

- ▶ (당초) 2020. 9. 1. ~ 9. 6.
- ▶ (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13. 24시
- ▶ (조정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

4-4. 인천대공원, 월미공원: [실내.외 다중이용시설 일부 폐쇄]

- ▶ (당초) 2020. 8. 24. ~ 별도 해제 시
- ▶ (조정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 (인천시)
 - ※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 내, 야영장, 매점 등을 포함한 모든 실내.외 다중이용 시설은 전면 폐쇄
 - ※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우울증 예방을 위해 산책로 등 실외공간은 개방
 - ※ 市 관할 모든 공원구역에서 실외에서도 미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(8. 24. 0시)

4-5. **인천 해수욕장**: [폐장]

- ▶ (유지) 2020. 8. 19. 0시 ~ **별도 해제 시**
 - ※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물품대여 종료 / <u>해양수산부 지침(</u>2020. 8. 18.)

5 (민간) 다중이용시설

5-1. **고위험시설 11종*** : [운영 중단]

- ▶ (당초) 2020. 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 [12종]
 - ※ PC방, 결혼식장뷔페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(8. 19. 18시 ~)
 - ※ 당초 유통물류센터(1종)는 고위험시설 운영중단에서 제외
- ▶ (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20. 24시 [12종]
- ▶ (조정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 [11종]
 - ※ (고위험시설 11종)
 -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. 뷔페
 - ※ PC방(고위험시설 해제) 당초 12종 → 11종으로 변경

5-2. 일부 다중이용시설 10종 :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[집합제한]

- ▶ (당초) 2020. 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
- ▶ (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20. 24시
- ▶ (조정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
 - ※ (10종) 오락실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실내결혼식장, 공연장, 영화관, 목욕탕.
 사우나, 멀티방.DVD방, 장례식장, PC방* 추가(핵심방역수최 준수 의무)
 - * (PC방 추가 조정) ※ 붙임 1) 참조
 - 고위험시설 해제, 미성년자 출입금지, 좌석 한 칸 띄어앉기, 음식섭취 금지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

5-3. 일정 규모(예 150㎡) 이상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

- :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[집합제한] ※ 붙임 1) 참조
- ▶ (당초) 2020. 8. 30. 0시 ~ 9. 6. 24시
- ▶ (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13. 24시
- ▶ (<u>조정</u>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
 - ※ 포장, 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,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

5-4. 프랜차이즈형 커피.음료전문점, 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/빙수 전문점

- :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[집합제한] ※ 붙임 1) 참조
- ▶ (당초) 2020. 8. 30. 0시 ~ 9. 6. 24시
- ▶ (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13. 24시
- ▶ (조정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
 - ※ 포장, 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,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
 - ※ 한 테이블 내, 좌석 한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어 앉기
 - * 예) 파리바게트, 뚜레쥬르, 배스킨라빈스, 설빙 등 까지 확대

5-5. 교습소, 학원(독서실 포함)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실내체육시설

- :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[<u>집합제한]</u> ※ 붙임 1) 참조
- ▶ (당초) 2020. 8. 30. 0시 ~ 9. 6. 24시
- ▶ (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13. 24시
- ▶ (조정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

5-6.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: [운영중단 권고] (인천시)

- ▶ (당초) 2020. 8. 23. 0시 ~ 별도 해제 시
- ▶ (연장) 2020. 8. 23. 0시 ~ 9. 13. 24시
- ▶ (조정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
 - ※ 공동주책에 설치된 실내체육시설, 독서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운영중단 권고

5-7. 병원(신규) 요양시설 등(내용 추가) 방역강화

- ▶ (당초) 2020. 8. 30. 0시 ~ 9. 6. 24시
- ▶ (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20. 24시
- ▶ (<u>조정</u>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
 - ※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, 요양병원·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
 - ※ 병원 입원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(전국, 2단계 한시), 수도권 요양병원・ 시설에 대한 점검 및 표본 진단검사 실시, 면회 금지 유지 등 방역관리 철저
 - ※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(pooling) 실시 검토
 - ※ 수도권 요양병원 · 요양시설 <u>면회 금지</u>, 주·이간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* **휴원 권고**
 - ※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·프로 그램 운영 금지

5-8. 방문판매업 소모임 : [점검.관리 강화]

- ▶ (당초) 2020. 8. 30. 0시 ~ 9. 6. 24시
- ▶ (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20. 24시
- ▶ (<u>조정</u>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
 - ※ (조정내용) 방문판매업의 소모임, 투자설명회 등 집중 점검 및 구상권 청구 등 대응 강화
 - ※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 등에 점검·관리 강화
 - ※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제조합에서 홍보관 등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운영 중
 - ※ 공정거래위원회(1670-0007), 직접판매공제조합(080-860-1202),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(02-2058-0831)

5-9. 종교시설

□ 교회 (중수본 지침)

- ▶ (당초) 2020. 8. 19. ~ 별도 해제 시
- ▶ (<u>조정</u>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
-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,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,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하는 행정조치(집합제한)

교회		
책임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	
■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	■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	
■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	■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	
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	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	
■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	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	
■ 출입자 명부 관리	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	
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	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	
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	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	
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	■ 마스크 착용	
■ 방역관리자 지정	■ 바르크 식용	
■ 마스크 착용	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	
■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(대장작성)		
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		

수도권 **교회 대상 비대면 예배** 가이드라인

- ㅇ 비대면 예배는 영상제작을 위한 비대면 예배 필수인력으로 최소화하여 운영 (전체 20명 이내)
- ※ 단,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인력도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
- ① 마스크 상시 착용
- ② 음식 섭취 금지
- ③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
- ④ 사람간 2m(최소1m)이상 거리두기
- ⑤ 환기 및 소독 철저
- ⑥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
- *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,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

□ 타 종교시설(교회 外) (인천시)

- ▶ (당초) 2020. 8. 30. ~ **별도 해제 시**
- ▶ (조정) 2020. 9. 14. 0시 ~ 별도 해제 시
-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미사·법회 등을 제외한 **종교시설 주관 대면**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
- 정규 미사·법회 시 11개 항목 준수(필수)

타 종교시설 (교회 外)

- ① 정규 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
- ②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(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)
- ③ 출입구에서 발열,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,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, 고위험군 출입 금지(대장 작성)
- ④ 간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.4주간 보관)
- 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(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)
- ⑥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
- ⑦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2m 이상 유지
- ⑧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(일시·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)
 - 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
- ⑨ 음식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
- ⑩ 종교행사 시 지정석 지정 운영
- ⑪ 미사.법회 시 성가 자제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

5-10.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: [휴관·휴원 권고]

- ▶ (당초) 2020. 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
- ▶ (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20. 24시
- ▶ (<u>조정</u>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
 - ※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

6 학교(유.초.중.고)

▶ 교육부 계획에 의거 추진

7 기관 . 기업

7-1. (市 및 군.구, 공사.공단 직원) 유연.재택근무 활성화

- ▶ (당초) 2020. 8. 20. 0시 ~ 별도 해제 시
- ▶ (연장) 2020. 8. 24. 0시 ~ 별도 해제 시
- ▶ (<mark>조정</mark>) 2020. 9. 14. 0시 ~ 별도 해제 시
-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및 대민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
- (시행방안) 휴가, 재택근무 등 현원(필수인원 등 제외) 1/3 의무 시행
 - *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, 필수인원 등 제외 후 대상자의 1/3이상 의무시행
 - * 소방, 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부서)은 제외
 - *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
 - * 임신 및 육아공무원 재택근무 우선 실시
 - * 시차출퇴근제 등 병행실시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
 - ※ 군.구, 공기업, 출자.출연기관 등은 市 시행기준 준용 권고(기관장 판단 시행)

7-2. (민간기업)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제한 권고

- ▶ (당초) 2020. 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
- ▶ (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20. 24시
- ▶ (조정) 2020. 9. 14. 0시 ~ 9. 27. 24시

8 우리 市 행정조치

8-1.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.외 마스크 의무 착용

- ▶ (적용기간) 2020. 8. 20. 15:00 ~ 별도 해제 시 까지
- ▶ (적용장소) 실내*, 실외**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
 - ※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
 - * 실내 :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
 - ** 실외: 집회,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
- ▶ (계도기간) 2020. 10. 12.
- ▶ (시행일자) 2020. 10. 13.
- ▶ (과 태 료) 10만원 이하

8-2.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* 행정명령 조치

- ▶ (기 존) 2020. 8. 24. 0시 ~ 9. 6. 24시까지
- ▶ (연 장) 2020. 9. 7. 0시 ~ 9. 20. 24시
- ▶ (명령대상)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자
- ▶ (벌 금) 벌금 300만원 이하
 - * 금지되는 집회는 '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

8-3. 인천시 관내 등록업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

- ▶ (적용기간) 2020. 8. 26. 0시 ~ 별도 해제 시 까지
- ▶ (계도기간) 2020. 10. 11.
- ▶ (시행일자) 2020. 10. 12.
- ▶ (과 태 료) 운송사업자(300만원 이하) / 이용자(10만원 이하)

8-4. 인천광역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 행정조치 : [인천시 행정조치 해제]

- ▶ (인천시 행정조치) 2020. 9. 3. 0시 ~ 9. 13. 24시까지
- ▶ (인천시 조치해제) 2020. 9. 14. 0시

구 분	해 제 사 항 (9. 14. 0시)		
TE	사업주.책임자	이용자	
핵심 방역수칙 의무화	 ▶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.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·배달만 허용 ▶ 21시 ~ 익일 05시까지는 편의점 내 취식장소 및 야외 테이블 제공 금지 ▶ 사업주·종시자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▶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* 계산포장 위해 대기 시, 간격 유지 	 ▶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▶ 21시 ~ 익일 05시까지는 편의점 내 취식 및 야외 테이블 이용. 취식 행위 금지 ▶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▶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* 계산포장 위해 대기 시, 간격 유지 	
권고사항	 출입자 명부 관리(권고) 전자출입명부 설차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권고)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	

※ 유의사항

- 편의점의 경우, 인천광역시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해제(9. 14. 0시)
- 다만, 휴게음식점 150㎡ 이상의 편의점은 9. 14.(월) 0시 ~ 9. 27.(일) 24시까지 아래 정부지침 상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임에 유의

[붙임 1] 정부지침- 시설별 핵심방역수칙(휴게음식점)과 동일		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	
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작성 시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	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성 본인의 사군구(거주자), 전화번호 장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▶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▶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* 주문·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	

붙임

정부지침 -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(수도권)

□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· 휴게음식점 · 제과점 (예: 150m² 이상)

사업주·종사자 수칙

- ▶ 출입자 명부 관리
- 교 업가 50 기 년 -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/주자),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가)
-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:이용(권고)
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-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
 -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
- ▶ 시설 내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
 - * 주문·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(최소 1m) 간격 유지
- ▶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
-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

이용자 수칙

-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규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- ▶ 마스크 착용
-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
- ▶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
- * 주문·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(최소 1m) 간격 유지

※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·제과제빵·아이스크림·빙수전문점 제외(별도 핵심 방역수칙 적용)

□ 교습소·학원(독서실 포함)·스터디카페·직업후련기관

사업주 종사자 수칙

- ▶ 출입자 명부 관리
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
-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
- ▶ 출입자 증상 확인(발열체크 등)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
-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
 -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- ▶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
 - *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
- ▶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
-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

이용자 수칙

-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-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- ▶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
- ▶ 마스크 착용
-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- 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
- *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

☐ 프래차이즈형 커피·음료·제과제빵·아이스크림·빙수전문점

사업주 종사자 수칙

▶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

- *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카 띄워 앉기 실시
- ▶ 출입자 명부 관리
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
-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
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-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
 -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
- ▶ 시설 내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* 주문·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- ▶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
-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

이용자 수칙

- ▶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
 -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카 띄워 앉기 십시
- ►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- ▶ 마스크 착용
-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
- ▶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
- * 주문 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
<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>

이블 내 석 한 칸	•	0.6
워 앉기	0	
IOI브 가	0 0	0.0



테 좌

띄







□ 실내체육시설

사업주·종사자 수칙

- ·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주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
 -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
-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
 -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- ▶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
- ▶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
-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

이용자 수칙

-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- ▶ 마스크 착용
-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- 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

□ PC방 핵심 방역수칙 (전국)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■ 미성년자(만19세 미만) 출입금지	■미성년자(만19세 미만) 출입금지
■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	■좌석 한 칸 띄워 앉기
■시설 내 음식 판매·섭취 금지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
■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	■ 전자출입명부 인증*
■출입자 명부 관리	* 수기명부 작성 가능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
-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·이용*	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제시)
*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	■마스크 착용
*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	
■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	
■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	
■일 2회 이상 시설 환기	